|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1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본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5년 4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의 생산과 가공(이하 '식품생산'으로 칭함), 식품의 유통과 요식 서비스(이하 '식품경영'으로 칭함);  (2) 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3) 식품의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와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되는 용구·설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으로 칭함)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사용;  (5) 식품의 저장과 운송;  (6)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 농업 초급제품(이하 '식용 농산품'으로 칭함)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 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 농산품의 시장유통, 관련 품질안전 표준의 제정, 관련 안전정보의 공표와 이 법에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식품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역량의 공동관리를 실행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제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신의성실 및 자율적이어야 하고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지며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를 기획 및 추진하고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및 공표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관련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및 식품안전 돌발사건 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조율하며 식품안전 전과정 감독관리 업무 매커니즘과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이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책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약품 감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향(鄕)·진(鎭) 또는 특정 구역에 파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약품 감독관리 책임제를 시행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직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 감독관리 업무에 대한 평의, 심사평가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에 대한 평의, 심사평가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 업무를 본 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식품안전 업무경비를 본급 정부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 능력 육성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 업무를 위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각자의 직책, 업무분장과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식품업계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관에 따라 업계규범과 장려·징계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며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적법한 생산경영을 유도 및 촉구하며 업계의 신의성실을 촉진시키고 안전지식을 홍보, 보급해야 한다.  소비자협회 및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이법의 규정에 위배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한다.  **제10조** 각 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지식을 보급하며 사회조직, 기층군중자치단체,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 보급사업을 장려하고 건강한 음식습관을 추천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 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강화한다.  뉴스미디어는 식품안전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에 대한 공익홍보를 진행하고 식품안전 불법행위에 대한 여론의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식품안전에 관한 홍보 보도는 진실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에 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전개를 권장, 지원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선진기술과 선진관리규범을 도입하여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 및 지원한다.  국가는 엄격한 농약 사용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맹독성·고독성·고잔류성 농약의 탈락을 가속화하며 대체품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추진하고 고효율성·저독성·저잔류성 농약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2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식품안전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식품안전정보를 문의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 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사업을 위해 크게 기여한 업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14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기인성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 중의 유해요인을 모니터링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식품안전위험 정보를 입수한 즉시 확인하여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식품안전위험 정보 및 의료기구로부터 보고받은 식품 기인성 질병 등 질병 관련 정보를 분석, 연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시에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근거로 본 행정구역의 구체 정황과 결부시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 조정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후 실시한다.  **제15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구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을 근거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의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업무 수행인력은 관련 식용 농산품 재배·양식장, 식품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샘플 채취 시 시장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16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결과 잠재적인 식품안전 우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 및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는 진일보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 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정보, 과학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근거로 과학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물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국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식품안전위험 평가를 책임지고 조직하며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안전위험 평가를 진행하다.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발표한다.  농약, 비료, 동물용 약품, 사료와 사료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가 동참해야 한다.  생산경영자에게 식품안전위험 평가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되며 샘플 채취 시 시장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식품안전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또는 신고를 통해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잠재적인 안전 우환이 존재할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2)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 평가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3) 감독관리의 중점 분야, 중점 품종을 확정하기 위하여 위험 평가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4) 식품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 발견된 경우;  (5) 특정 요인이 식품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6)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위험 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제19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는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위험 평가의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식품안전위험 평가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위험원, 관련 검사 데이터 및 결론 등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 제18조에 규정한 경우에 속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지체없이 식품안전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무원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는 적시에 식품, 식용 농산품 안전위험 모니터링 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는 적시에 식품, 식용 농산품 안전위험 평가결과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는 식품안전 표준을 제정, 개정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식품안전위험 평가에서 불안전 판정을 받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하여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즉시 사회에 공고하고 식용 또는 사용 중단을 소비자에게 고지함과 더불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해당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을 중단시켜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즉시 제정, 개정해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를 근거로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종합분석에서 안전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식품의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식품안전위험 경고를 제출하고 이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 및 그 기술기구는 과학성, 객관성, 적시성,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 식품검사기구, 인증기구,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 및 뉴스미디어 등을 조직하여 식품안전위험 평가정보와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24조** 식품안전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대중의 신체건강 보장을 취지로 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식품안전 표준은 강제시행 해야 하는 표준으로 식품안전 표준 이외의 기타 식품 강제성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식품안전 표준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중의 발병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동물용 약품 잔류물, 생물독소,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규정;  (2) 식품첨가제의 종류, 사용범위, 사용량;  (3) 영유아 전용식품과 기타 특정 인원 주·부식의 영양성분에 대한 요구;  (4) 위생, 영양 등 식품안전 요구와 관련한 라벨, 표지, 설명서에 대한 요구;  (5) 식품생산경영 과정에 대한 위생 요구;  (6) 식품안전과 관련한 품질 요구;  (7) 식품안전과 관련한 식품검사 방법과 절차;  (8) 식품안전 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할 기타 내용.  **제27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공표하고 국무원 표준화행정부서가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한다.  식품의 농약 잔류물, 동물용 약품 잔류물에 대한 제한규정 및 그 검측 방법과 절차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국무원 농업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가축·가금의 도살 검측 절차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8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은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에 근거하고 식용 농산품 안전위험 평가결과를 충분히 고려하며 관련 국제표준 및 국제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를 참조함과 더불어 식품안전 국가표준안을 사회에 공개하여 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조직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 농약,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 및 국무원 관련 부서,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의 대표들로 구성하고 식품안전 국가표준안의 과학성, 실용성 등을 심사한다.  **제29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지방 특색식품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 및 공표할 수 있으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제정된 경우 당해 지방표준은 즉시 폐지된다.  **제30조** 국가는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본 기업에 적용시키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 비안(備案)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31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제정 및 비안(備案)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지방표준 및 기업표준을 그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대중이 무료로 조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 표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적시에 지도, 해답해야 한다.  **제32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지방표준의 집행상황에 대한 추적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근거로 적시에 식품안전 표준을 개정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는 식품안전 표준의 집행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수집, 취합하여 적시에 동급 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업계협회가 식품안전 표준 집행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식품생산경영**  **제1절 일반 규정**  **제33조** 식품생산경영은 식품안전 표준과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맞물리는 식품원료 처리장소와 식품 가공·포장·저장장소를 구비해야 하고 해당 장소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유독·유해물질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맞물리는 생산경영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환기, 방부, 방진(防塵), 파리·쥐·벌레 방지, 세척 및 폐수처리, 쓰레기·폐기물 저장 설비 또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3) 전직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 전문 기술인력, 식품안전 관리인력 및 식품안전 보장 규칙제도가 있어야 한다.  (4) 합리적인 설비배치와 제조 절차가 있어야 하고 가공대기식품과 즉석식품, 원료와 완제품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식품과 유독물질, 불결물질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  (5) 식기, 취사도구와 즉석식품 용기는 사용 전 반드시 세정, 소독하여야 하고 취사도구, 용구는 사용 후 반드시 세정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의 저장·운송·상하역 용기, 수단과 설비는 안전, 무해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안전에 필요한 온도, 습도 등 특정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과 유독·유해물질을 동시에 저장,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7) 즉석식품은 무독, 청결한 포장재료, 식기, 취사도구 및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8) 식품생산경영인원은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의 생산경영 시 손을 깨끗이 세척하고 청결한 작업복,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무포장 즉석식품 판매 시 무독, 청결한 용기, 판매기구와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9) 용수는 국가가 규정한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0)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한 세척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11)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요구사항.  식품생산경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식품의 저장, 운송과 상하역에 종사하는 경우 전 항 제(6)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아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을 금지한다.  (1) 식품원료가 아닌 것으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 유해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회수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2) 발병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동물용 약품 잔류물, 생물독소,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식품안전 표준의 제한을 초과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유관 제품;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  (4) 식품첨가제의 사용 범위와 제한량을 초과한 식품;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원에 제공되는 주·부식품;  (6) 부패 변질, 유지 산화, 곰팡이가 끼고 벌레 발생, 불결, 이물질 함유, 가짜 및 잡물질 첨가 또는 감각 성질이 이상한 식품, 식품첨가제;  (7) 병사, 독사 또는 사인불명의 가축, 가금, 동물, 수산물의 육류 및 그 제품;  (8) 규정에 따라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제품;  (9) 포장재료, 용기, 운송용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식품첨가제;  (10) 생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식품첨가제;  (11) 라벨이 없는 예비포장 식품, 식품첨가제;  (12) 국가가 질병예방 등 특수 수요에 따라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  (13)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제35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 허가제를 시행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단, 식용 농산품의 유통은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규정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심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허가하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6조** 소규모 식품생산가공 공장과 식품노점상 등이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한 그 생산경영 규모, 조건과 맞물리는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위생, 무독, 무해를 보장해야 하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소규모 식품생산가공 공장, 식품노점상 등에 대한 종합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와 통일 규획을 강화하여 그 생산경영 환경을 개선하며 소규모 식품생산가공 공장, 식품노점상 등이 생산경영 조건을 개선하고 집중거래시장, 점포 등 고정장소에 진입하여 경영하거나 특정 임시 경영구역, 시간대에 경영하는 것을 격려 및 지원해야 한다.  소규모 식품생산가공 공장과 식품노점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37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서류를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심사해야 한다.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허가를 내리고 공표하며;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38조**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아니되며 전통에 따라 식품이기도 하고 한약재이기도 한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따라 식품이기도 하고 한약재이기도 한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공표한다.  **제39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제를 시행한다. 식품첨가제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하는 식품첨가제의 품종과 맞물리는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전문기술인력과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이 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생산은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0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적으로 확실히 필요하고 위험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사용 허용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기술적인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은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 등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공업품 생산허가증 관리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실시한다. 질량감독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42조** 국가는 식품안전 이력추적제도를 구축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의 이력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생산경영 정보를 채집, 보관하고 식품안전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농업행정부서 등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이력추적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제43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식품생산의 규모화와 경영·배송의 다점포화를 격려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책임보험 가입을 격려한다.  **제2절 식품경영 과정 통제**  **제44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종업원에 대한 식품안전 지식 교육을 실시하며 식품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고 본 기업의 식품안전 업무를 전격 책임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 관리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안전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과 심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평가에서 식품안전 관리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해당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인력에 대해 임의 추출 감독검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추출 감독검사평가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 및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감염된 자는 즉석 식품 접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즉석 식품 접촉 업무에 종사하는 식품생산경영인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증명 취득 후에야 비로소 업무에 임할 수 있다.  **제46조** 식품생산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요구를 제정 및 실시하여 그가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원료 구매, 원료 검수, 원료 투입 등 원료 통제;  (2) 생산제조공정, 설비, 보관, 포장 등 핵심 생산단계 통제;  (3) 원료검사, 반제품 검사, 완제품 출고 검사 등 검사 통제;  (4) 운송 및 인도 통제.  **제47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자기검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안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생산경영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더이상 식품안전 요구를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 요구에 부합되는 위해성 분석 및 핵심 통제 포인트 시스템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양호한 생산규범, 위해성 분석 및 핵심통제 포인트 시스템 인증을 통과한 식품생산경영기업에 대해 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이 더이상 인증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적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추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식용 농산품 생산자는 식품안전 표준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동물용 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농업 투입품을 사용해야 하고 농업 투입품 사용 안전간격기간 또는 약물사용 중단기간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농업 투입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맹독·고독 농약을 채소, 과일, 찻잎과 약초 등 국가에서 규정한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용 농산품 생산기업과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은 농업 투입품 사용기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서는 농업 투입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와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농업 투입품 안전사용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해야 한다.  **제50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구매 시 납품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합격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의 경우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구매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구매일자 및 납품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은 최소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며; 명확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1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출고 식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상황을 검사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검사합격증 번호, 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2조**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그가 생산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통과한 후에 출고 또는 판매해야 한다.  **제53조** 식품경영자는 식품 구매 시 납품자의 허가증과 식품출고검사 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명(이하 '합격증명서류'로 칭함)을 검사해야 한다.  식품경영기업은 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입고일자 및 납품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통일배송의 경영방식을 취하는 식품경영기업은 본사가 통일적으로 납품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식품입고검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식품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은 식품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여 도매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4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재고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무포장 식품 보관시 보관위치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과 연락처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55조**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원료통제요구를 제정 및 실시해야 하고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원료를 구매해서는 아니된다.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가공 과정을 공개하고 식품원료 및 그 조달원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창도한다.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가공 과정에서 가공대기 식품 및 원료를 검사해야 하고 이 법 제34조 제(6)호에 규정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가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6조**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가공·저장·진열 등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며 보온시설 및 냉장·냉동시설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교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요구에 따라 식기, 취사도구를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세척, 소독을 거치지 아니한 식기, 취사도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취사도구의 세척과 소독 용역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식기, 취사도구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제57조**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양로기구, 건축공사현장 등 단체로 식사하는 업체의 식당은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음식공급업체로부터 음식을 주문구매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으로부터 주문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주문구매한 식품을 검사해야 한다. 음식공급업체는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끼니별로 가공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양로기구, 건축공사현장 등 단체로 식사하는 업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단체로 식사하는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상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줄이며 제때에 잠재적인 식품안전 우환을 제거해야 한다.  **제58조** 식기, 취사도구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는 상응하는 작업장소, 세척·소독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용수와 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는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기타 국가표준, 위생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기, 취사도구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는 소독한 식기, 취사도구에 대해 차수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만 출하할 수 있으며 출하 시 소독합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소독 후의 식기, 취사도구는 그 독립포장에 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소독일자 및 사용기한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제59조**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식품첨가제 출고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출고제품의 검사함격증과 안전상황을 검사하고 식품첨가제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검사합격증 번호, 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0조** 식품첨가제 경영자는 식품첨가제 구매 시 법에 따라 납품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서류를 검사하고 식품첨가제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구매일자 및 납품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0조** 집중거래시장의 경영자, 매장 임대자와 전시회 주최자는 법에 따라 입점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하고 그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그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제지시킴과 더불어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61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입점 식품경영자에 대해 실명등기하고 그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그 허가증도 심사해야 한다.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입점 식품경영자의 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제지시킴과 더불어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63조** 국가는 식품리콜제도를 구축한다. 식품생산자는 그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인체건강을 해할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회수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회수 상황과 통보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식품에 전 항에 규정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경영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경영중단 상황과 통보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회수해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원인으로 인해 그가 경영하는 식품에 전 항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식품경영자는 회수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회수한 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 소각 등 조치를 취하여 회수한 식품이 다시 시장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단, 라벨, 표시 또는 설명서가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회수한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자의 시정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시정조치를 소비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 회수 및 처리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회수 식품에 대한 무해화 처리, 소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 장소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경영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회수 또는 경영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 식용 농산품 도매시장은 검사설비와 검사인력을 배치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하여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 농산품에 대해 샘플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판매의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65조** 식용 농산품 판매자는 식용 농산품 입고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식용 농산품의 명칭, 수량, 입고일자 및 납품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은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66조**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용 농산품의 포장, 신선도 유지, 저장, 운송 중에 사용되는 신선도유지제, 방부제 등 식품첨가제와 포장재료 등 식품 관련 제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절 라벨, 설명서와 광고**  **제67조** 예비포장 식품의 포장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 규격, 순함유량, 생산일자;  (2) 성분 또는 배합표;  (3) 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4) 유통기한;  (5) 제품표준코드번호;  (6) 저장조건;  (7) 사용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에서의 통용명칭;  (8) 생산허가증 번호;  (9)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 표준의 규정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영유아와 기타 특정 인원에게 제공하는 주·부식품의 라벨에는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유량을 명시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8조** 식품경영자는 무포장 식품 판매 시 무포장 식품의 용기, 외포장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및 생산경영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69조**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현저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70조** 식품첨가제는 라벨, 설명서와 포장이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에는 이 법 제67조 제(1)호~제(6)호, 제(8)호, 제(9)호에 규정한 사항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을 기재해야 하며 라벨에는 '식품첨가제'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71조**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질병 예장, 치료 기능과 연관시켜서는 아니된다. 생산경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라벨,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진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는 뚜렷하고 명백해야 하며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사항을 현저하게 표시하여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가 그 라벨, 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에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제72조** 식품경영자는 식품 라벨에 표시한 경고표지, 경고문 또는 유의사항의 요구에 따라 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73조** 식품광고의 내용은 진실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연관시켜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및 식품검사기구, 식품업계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아니된다. 소비자단체는 요금을 수취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기타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아니된다.  **제4절 특수식품**  **제74조** 국가는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과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제75조** 건강기능을 주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인체에 급성, 아급성, 만성 피해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목록과 건강기능식품의 주장을 허용하는 건강기능 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국가한약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 및 공표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목록은 원료의 명칭, 사용량 및 그 효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에 열거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식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6조**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최초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단, 최초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물질 보충 기능식품에 속하는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기타 건강기능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출국(지역) 주관부서의 시장판매 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77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등록 시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보고서, 제품의 배합방법, 제조공예, 안전성·건강기능 평가, 라벨, 설명서 등 서류와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술심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주장하는 기능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적시에 해당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안(備案)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비안(備案) 시 배합방법, 제조기술, 라벨, 설명서 및 제품의 안전성과 건강기능에 대한 설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8조**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설명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연관시켜서는 아니되며 그 내용이 진실적이어야 하고 등록 또는 비안(備案)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식용가능 대상자, 식용 불가능 대상자, 기능성분 또는 대표적 성분 및 그 함유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이 제품은 약물 대체품이 아닙니다.'란 성명을 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성분은 라벨, 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79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이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 외에 '이 제품은 약물 대체품이 아닙니다.'란 성명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생산기업이 소재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광고 비준문서를 취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미 비준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목록과 비준한 광고의 내용을 적시에 공개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80조**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제품의 배합방법, 제조기술, 라벨, 설명서 및 제품의 안전성, 영양충족성과 특수의학용도 임상효과에 대한 설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광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약품광고 관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81조**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 통제를 실시하고 출고하는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한 차수 별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신선우유, 부재료 등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등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장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제품 배합방법 및 라벨 등 사항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배합방법 연구개발보고서와 배합방법의 과학성,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포장의 방식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해서는 아니되며 동일 기업이 동일 배합방법으로 서로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2조**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의 등록인 또는 비안(備案)인은 그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등록 또는 비안(備案)한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목록을 적시에 공개해야 하며 등록 또는 비안(備案)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은 등록 또는 비안(備案)한 제품 배합방법, 제조기술 등 기술요구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제83조**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및 기타 특정인원에게 제공하는 주·부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양호한 생산규범의 요구에 따라 그가 생산하는 식품과 맞물리는 생산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자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식품검사**  **제84조** 식품검사기구는 국가의 인증·인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인증을 취득한 후에 식품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 조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가 발행한 검사보고서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검사 자원을 통합하여 자원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85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가 지정한 검사원이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검사원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표준 및 검사규범에 따라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발행한 검사데이터와 결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아니된다.  **제86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원 책임제를 시행한다. 식품검사보고서에는 식품검사기구의 공인을 날인해야 하고 검사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원은 발행한 식품검사보고서에 대해 책임진다.  **제8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에 대한 샘플추출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검사를 면제해서는 아니된다. 샘플추출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출 샘플을 구매해야 하며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검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검사비와 기타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88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검사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샘플추출검사를 실시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직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재검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표된 재검사기구 명록 중에서 재검사기구를 임의로 확정하여 재검사를 진행한다. 재검사기구가 발행한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결론이다. 재검사기구와 1차검사기구가 동일한 기구이어서는 아니된다. 재검사기구 명록은 국무원 인증인가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가 공동으로 공표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신속검출 방식으로 실시한 식용 농산품 샘플추출검사 결과에 대해 검사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4시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는 신속검출 방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89조** 식품생산기업은 스스로 그가 생산한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식품업계협회와 소비자협회 등 단체, 소비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식품검사를 의뢰할 수요가 있을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0조** 식품첨가제의 검사는 이 법의 식품검사 관련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6장 식품 수출입**  **제91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수출입 식품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92조**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 상품 검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93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기업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수입업체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집행 중인 관련 국가(지역)의 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제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표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적용을 결정하고 적시에 해당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한다.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전 항에 규정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제94조**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기업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이 이 법과 중국의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하며 라벨,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전 항에 규정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수입한 식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인체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제95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이 중국 국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식품에서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지체 없이 위험 조기경보 또는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지체없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6조** 중국 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중국 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그 자체 원인으로 인해 수입한 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이미 비안(備案)한 해외 수출업체, 대리업체, 수입업체와 이미 등록한 해외 식품생산기업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97조** 수입한 예비포장식품, 식품첨가제는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중문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이 법과 중국의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와 국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예비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설명서가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8조** 수입업체는 식품, 식품첨가제 수입·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식품, 식품첨가제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로트번호 또는 수입번호, 유통기한, 해외 수출업체와 구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화물인도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9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그의 수출식품이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의 요구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과 수출식품원료 재배·양식장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100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아래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 취합하여 적시에 관련 부서, 기구 및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1)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식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식품안전정보;  (2) 식품업계협회와 소비자협회 등 단체,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3) 국제조직, 해외 정부기구가 발표한 위험조기경보 및 기타 식품 안전정보와 해외 식품업계협회 등 단체,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안전정보;  (4) 기타 식품안전정보.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수출입식품의 수입업체, 수출업체와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신용기록을 수립하여 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수출업체와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경우 그가 수출입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101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중국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심사결과를 근거로 해당 검사검역 요구를 확정할 수 있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제102조** 국무원은 국가 식품안전사고 긴급대비책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긴급대비책 및 본 행정구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긴급대비책을 제정하고 직상급 인민정부에 보고 및 비안(備案)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비책은 식품안전사고의 등급 구분, 사고처리조직의 지휘시스템과 직책, 예방·조기경보 매커니즘, 처리절차, 긴급보장조치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여 본 기업의 각 항 식품안전사고 대비조치 시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인 사고 우환을 적시에 제거해야 한다.  **제103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사고발생업체와 환자를 접수하여 치료하는 업체는 지체없이 사고발생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는 일상 감독관리 실시 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했거나 사고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를 보고받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긴급대비책의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긴급대비책의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식품안전사고를 은폐, 허위보고 하거나 보고를 지연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증거를 은폐, 조작, 훼멸해서도 아니 된다.  **제104조** 의료기구는 그가 접수한 환자가 식품 기인성 질병 환자에 속하거나 식품 기인성 질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전염병 또는 기타 돌발 위생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0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사고를 보고받은 후 즉시 동급 위생행정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조사처리를 진행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  (1) 긴급구조 업무를 전개하여 식품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을 구조치료한다.  (2)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과 그 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이 확인된 식품과 그 원료의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거나 경영을 중단하도록 명한다.  (3) 오염된 식품 관련 제품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세척과 소독을 명한다.  (4) 정보발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법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상황을 발표하며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대비책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즉시 사고처리지휘기구를 구성하여 긴급대비책을 가동하고 전 항과 긴급대비책의 규정에 따라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사고현장에 대해 위생처리를 하고 사고와 연관된 요인에 대해 전염병학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에 전염병학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6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즉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사고책임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관련 부서의 직책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직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사고책임 조사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와 연관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책임조사를 실시한다.  **제107조**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는 실사구시, 과학을 존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적시에 정확하게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책임을 판정하며 시정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조사는 사고발생업체의 책임을 규명함과 더불어 관련 감독관리부서, 식품검사기구, 인증기구 및 그 업무인력의 책임도 밝혀야 한다.  **제108조** 식품안전사고 조사부서는 관련 업체와 개인에게 사고 관련 상황을 알아보고 관련 서류와 샘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업체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와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감독관리**  **제10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와 식품안전 실정 등을 근거로 감독관리의 중점, 방식과 빈도수를 확정하고 위험 등급별로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를 동원하여 본 행정구역의 연간 식품안전 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표한 후 따라서 실시한다.  연간 식품안전 감독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감독관리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영유아와 기타 특정인원에게 제공하는 주·부식품;  (2) 건강기능식품 생산과정에서의 첨가행위와 등록 또는 비안(備案)한 기술요구에 따라 생산한 상황, 건강기능식품의 라벨과 설명서 및 홍보자료 상의 기능에 대한 홍보 상황;  (3) 식품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식품생산경영자;  (4)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결과 잠재적인 식품안전 우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1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는 각자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생산경영자가 이 법을 준수한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1) 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생산경영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샘플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관련 계약서,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열, 복사할 수 있다.  (4)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거나 잠재적인 안전 우환이 존재한다거나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차압, 압류할 수 있다.  (5) 불법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차압 한다.  **제111조** 식품안전위험 평가에서 식품에 잠재적인 안전 우환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됨에 따라 식품안전 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표준의 제·개정에 앞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적시에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임시 제한량 기준과 임시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생산경영과 감독관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1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서 규정한 신속검출 방법으로 식품에 대한 샘플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샘플추출검사에서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검출된 식품은 이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샘풀 추출검사에서 관련 식품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행정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1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 신용기록을 수립하여 허가의 발급, 일상 감독검사 결과, 불법행위 조사 등 상황을 기록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하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의 빈도수를 늘이고 불법행위의 경위가 심각한 식품생산경영자의 경우 투자주관부서,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관련 금융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4조** 식품생산경영 과정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식품안전 우환에 대한 제거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담당자와의 책임상담을 추진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 잠재적인 우환을 제거해야 한다. 책임상담 상황과 시정 상황은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1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는 본 부서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자문, 신고, 제보를 받아야 한다. 자문, 신고, 투서가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는 경우 접수하고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적시에 답변, 조사확인, 처리해야 하며; 본 부서의 직책이 아닌 경우 처리권한이 있는 부서로 송치하고 자문·신고·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처리권한이 있는 부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적시 처리해야 하며 처리를 미루어서는 아니된다. 조사에서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제보인을 장려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인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보자가 소속기업을 제보한 경우 해당 기업은 근로계약을 해제, 변경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제보자를 공격·보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는 집법인력에 대한 식품안전 법률, 법규, 표준과 전문지식 및 집법능력 등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식품안전 집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 등은 식품안전 집법인력이 집법 과정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타당하지 않은 집법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본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 또는 감찰기관에 신고, 제보할 수 있다. 신고, 제보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은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내용을 식품안전 집법인력 소속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법률·기율 위반의 혐의가 있을 경우 이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 부서가 식품안전의 체계적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감독관리 대상구역 내의 잠재적인 식품안전 우환을 제때에 제거하지 못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는 그 주요 담당자와의 책임상담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가 식품안전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역적이고 중대한 잠재적 식품안전 우환을 제때에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그 주요 담당자와의 책임상담을 추진할 수 있다.  책임상담을 요구받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시정해야 한다.  책임상담 상황과 시정 상황은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평의기록과 심사평가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118조** 국가는 통일적인 식품안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식품안전정보 통일공표제도를 시행한다. 국가의 전반적인 식품안전 상황, 식품안전위험 경고정보,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및 그 조사처리 정보와 국무원이 확정한 통일공표가 필요한 기타 정보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공표한다. 식품안전위험 경고정보와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 정보의 영향력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한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가 공표할 수도 있다. 권한위임 없이 상기 정보를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일상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를 공표한다.  식품안전정보의 공표는 정확하고 적시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소비자와 사회여론의 오해를 막아야 한다.  **제119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는 이 법에서 통일적으로 공표하기로 규정한 정보를 장악한 경우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주관부서는 즉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는 장악한 식품안전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20조** 그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허위 식품안전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소비자와 사회여론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부서, 전문기구, 관련 식품생산경영자를 조직하여 사실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적시에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1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는 식품안전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지체 이 이송받은 사건을 심사해야 하며; 범죄사실이 있고 형사책임의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형사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품안전 범죄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안기관이 범죄사실이 없다거나 범죄사실이 현저하게 경미하여 형사책임의 추궁이 필요하지 않지만 법에 따라 행정책임의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와 감찰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환경보호부서 등 부서에 검사결론, 인정의견의 제공과 사건에 연루된 물품의 무해화처리 등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부서는 지체없이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122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경영허가 없이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 없이 식품첨가제 생산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불법소득과 불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 및 불법생산경영에 사용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가액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액이 1만위안 이상일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20배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 항의 불법행위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경영장소 또는 기타 조건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불법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식품·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제123조** 이 법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불법소득과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을 몰수하며 이와 더불어 불법생산경영에 사용된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할 수 있다.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의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0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 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그 가액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으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함과 더불어 공안기관이 직접적인 담당자와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1)식품원료가 아닌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에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유해물질을 첨가하거나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한 경우 및 상기 식품을 경영한 경우;  (2)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인원에게 제공되는 주·부식을 생산 경영한 경우;  (3) 병사, 독사 또는 사인 불명의 가금, 가축, 수산물의 육류를 경영하였거나 그 제품을 생산영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를 경영하였거나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제품을 생산 경영한 경우;  (5) 국가가 질병예방 등 특수 수요에 따라 생산경영을 명문으로 금지한 식품을 생산 경영한 경우;  (6) 약품을 첨가한 식품을 생산 경영한 경우.  전 항에 규정한 불법행위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경영장소 또는 기타 조건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불법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맹독·고독 농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공안기관이 제1항 규정에 따라 구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124조** 이 법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불법소득 및 불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를 몰수하며 이와 더불어 불법생산경영에 사용된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할 수 있다.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가액이 1만 위안 미안일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고; 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1) 발병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동물용 약품 잔류물, 생물독소,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 유해물질 함유량이 식품안전표준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한 경우;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로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하였거나 상기 식품, 식품첨가제를 경영한 경우;  (3)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와 사용량을 초과한 식품을 생산 경영한 경우;  (4) 부패 변질, 유지 산화, 곰팡이가 끼고 벌레 발생, 불결, 이물질 함유, 가짜 및 잡물질 첨가 또는 감각 성질이 이상한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경영한 경우;  (5) 허위 생산일자, 유통기한이 표시된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하였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 경영하였거나 등록한 제품 배합방법, 생산공정 등 기술 요구대로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7) 분포장 방식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하였거나 동일 기업이 동일 배합방법으로 서로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한 경우;  (8)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생산함에 있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9)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로부터 회수 또는 경영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또는 경영 중단을 거부한 경우.  전 항 및 이 법 제123조, 제125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질량감독부서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25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불법소득 및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를 몰수하며 이와 더불어 불법생산경영에 사용한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할 수 있다.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고; 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그 가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생산 중단 명령 내지 허가증 취소 처벌을 내린다.  (1) 포장재료, 용기, 운수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한 경우;  (2) 라벨이 없는 예비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또는 라벨, 설명서가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한 경우;  (3)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생산 경영하는 식품,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 하자가 존재하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도 아니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6조** 이 법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5,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위가 심각할 경우 조업·영업 정지 명령 내지 허가증 취소 처벌을 내린다.  (1)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자가 구매한 식품원료와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에 대해 규정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생산경영기업이 규정대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규정대로 식품안전관리인력에 대해 교육, 심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구매 시 허가증 및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규정대로 입고검사기록, 출고검사기록 및 판매기록 제도를 수립 및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식기, 취사도구 및 즉석식품을 담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 소독하지 않았거나 세척, 소독이 불합격일 경우 또는 규정대로 요식 서비스 시설·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세척,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6) 식품생산경영자가 건강증명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국무원 위생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즉석식품을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7) 식품경영자가 규정된 요구대로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건강기능식품 생산기업이 규정대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지 않았거나 비안(備案)한 제품 배합방법, 생산공정 등 기술요구대로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기업이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제품 배합방법, 라벨 등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지 아니한 경우;  (10) 특수식품 생산기업이 규정대로 생산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기검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정기 검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12)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양로기구, 건축공사현장 등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규정대로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식품생산기업,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규정대로 생산경영과정 통제요구를 제정,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식기, 취사도구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용수, 세척제, 소독제를 사용하였거나 규정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소독합격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한 식기를 출고하였거나 규정대로 독립 포장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가 규정대로 그가 생산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질량감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식용 농산품 판매자가 이 법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127조** 소규모 식품생산가공 공장 및 식품노점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8조** 사고발생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관련 증거를 은폐, 위조, 훼멸한 경우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29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이 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수입한 경우;  (2)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을 수입함에 있어 집행 표준을 제출하여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을 수입함에 있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경우.  (3)식품을 수출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수입업체가 관련 주관부서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거부한 경우.  수입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 식품첨가제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 해외 수출업체 또는 해외 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 및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이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30조** 집중거래시장의 경영자, 매장 임대자, 전시회 주최자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식품경영자로 하여금 시장에 입주하여 식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하거나 검사,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증 발급 부서가 허가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식품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식용 농산품 도매시장이 이 법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1조**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온라인 식품거래 경영자에 대해 실명등기, 허가증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보고, 온라인거래 플랫폼 서비스 중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허가증을 발급한 부서가 허가증을 취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식품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온라인 식품경영자 또는 식품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식품경영자의 진실한 명칭,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배상한다.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배상한 후 온라인 식품경영자 또는 식품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132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 운송 및 상하역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 부서가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33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관련 부서, 기구 및 그의 업무인력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식품안전 감독검사, 사고조사처리,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등 활동을 거절, 방해, 간섭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각 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영업 정지를 명하고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취소하고; 치안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제보자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 변경 또는 기타 방식의 공격·보복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4조** 식품생산경영자가 1년 내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누계 3차 이상 영업 정지, 허가증 취소 이외의 처벌을 받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영업 정지 명령 내지 허가증 취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135조** 허가증을 취소당한 식품생산경영자 및 그의 법정대표인, 직접 담당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하거나 식품생산경영 관리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으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직을 담당할 수 없다.  식품안전 범죄로 인해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평생 식품생산경영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직을 담당 할 수 없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전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36조** 식품경영자가 이 법에 규정한 입고검사 등 의무를 이행하였고 구매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또한 납품원에 대해 여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은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하며;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137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위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구, 기술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모니터링·평가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기술기구의 직접 담당 주관자와 기술인력에게 면직, 해고 처분을 내린다. 자격증이 있을 경우 해당 자격을 부여한 주관부서가 그 자격증을 취소한다.  **제138조** 식품검사기구, 식품검사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자격을 부여한 주관부서 또는 기구가 해당 식품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하고 그가 수취한 검사비용을 몰수하며 검사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병과하고; 검사비용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법에 따라 식품검사기구의 직접 담당 주관자와 식품검사인력에게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직접 담당 주관자와 식품검사인력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구의 인력은 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년 내에 식품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안전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허위 검사보고서의 발행으로 인해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를 야기하여 해고를 당한 식품검사기구의 인력은 평생 식품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검사기구가 식품검사업무 종사 자격을 박탈 당한 인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해당 기구에 자격을 부여한 주관부서 또는 기구가 해당 식품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식품검사기구가 허위 검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139조** 인증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인증결론을 발행한 경우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가 기수취 인증비용을 몰수하며 인증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병과하되 인증비용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 명령 내지 인증기구 비준문서 취소 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사회에 공표한다. 직접 담당 주관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 그 직업자격을 취소한다.  인증기구가 발행한 허위 인증결론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초래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140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에서 식품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거나 비준문건 미취득 또는 광고 내용이 비준문건과 일치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발표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광고 경영자·발표자가 허위 식품광고를 설계, 제작 및 발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 부서, 식품검사기구, 식품업계협회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거나 소비자단체가 비용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는 기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담당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중과실 기록, 좌천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리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식품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고 그 경위가 심각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해당 식품의 일시적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사회에 공표한다.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불법소득 및 불법판매식품을 몰수하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141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식품안전 정보를 조작, 유포하여 치안관리법 위반 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뉴스미디어가 허위 식품안전 정보를 조작, 유포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직접 담당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리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손해배상, 사과 등의 민사책임을 진다.  **제142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직접 담당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중과실 기록 처분을 내리고; 경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좌천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리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해고 처분을 내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그 주요 책임자는 인책 사직해야 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제때에 관련 부서를 동원·조율하여 효율적인 조치를 실시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나 손실이 초래된 경우;  (2) 본 행정구역 내의 여러 단계와 연관된 지역적 식품안전 문제를 적시에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나 손실이 초래된 경우;  (3) 식품안전 사고를 은폐, 허위 보고하였거나 보고를 지체한 경우;  (4) 본 행정구역 내에서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143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직접 담당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고, 과실 기록 또는 중과실 기록 처분을 내리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좌천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린다.  (1)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 감독관리직책을 명확히 하지 않고, 식품안전을 위한 전 과정 감독관리 업무 매커니즘과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지 아니 하였으며, 식품안전 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긴급대비책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규정에 따라 즉시 사고처리 지휘기구를 설립하고 긴급대비책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14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직접 담당 주과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중과실 기록 처분을 내리고; 경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좌천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리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해고 처분을 내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주요 책임자는 인책 사직해야 한다.  (1) 식품안전사고를 은폐, 허위 보고하였거나 보고를 지체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를 조사처리 하지 않았거나 식품안전사고를 보고받은 후 제때에 처리 하지 않아 사고가 확대되거나 만연된 경우;  (3) 식품안전위험 평가에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하였거나 부정적인 사회영향을 초래한 경우;  (4) 조건 미달 신청인에게 허가를 내렸거나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를 내린 경우;  (5)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4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직접 담당 주관자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고, 과실 기록 또는 중과실 기록 처분을 내리고; 경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좌천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리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해고 처분을 내린다.  (1) 관련 식품안정정보를 장악한 후 규정에 따라 상급 주관부서와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에 따라 상호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식품안전 불법행위 조사처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등 부서가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법으로 검사, 강제 등 집법조치를 취하여 생산경영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접 담당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147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체, 재산 혹은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생산경영자의 재산으로 민사배상책임과 과태료, 벌금을 모두 부담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으로 한다.  **제148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 또는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생산경영자는 우선책임제 원칙에 따라 먼저 배상을 해야 하며 책임을 미루어서는 아니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할 경우 경영자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할 경우 생산자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경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더불어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10배 또는 손해의 3배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금의 금액이 1,000위안 미만일 경우 1,000위안으로 한다. 단,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의 오해 유발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칙**  **제150조** 이 법에서 사용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식품이라 함은, 사람이 식용하도록 또는 음용하도록 제공되는 완제품과 원료, 전통에 따라 식품이기도 하고 한약재이기도 한 물품을 지칭하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식품안전이라 함은, 식품이 무독, 무해하며 반드시 함유해야 하는 영양분의 요구에 부합되고 인체건강에 그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비포장식품이라 함은, 미리 정량포장 하였거나 포장재료와 용기에서 제작한 식품을 지칭한다.  식품첨가제라 함은, 식품의 품질과 색상, 향기, 맛 및 부패방지, 신선도 유지와 가공공정의 수요에 따라 식품에 첨가한 인공합성물질 또는 천연물질을 지칭하며, 영양강화제도 포함된다.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와 용기라 함은, 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를 담는데 사용되는 종이, 대나무, 나무, 금속, 에나멜,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 등 제품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와 직접 접촉하는 코팅제품을 지칭한다.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되는 공구 및 설비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의 생산, 유통, 사용과정 중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와 직접 접촉하는 기계, 파이프, 전송라인, 용기, 용구, 식기 등을 지칭한다.  식품 세척제·소독제라 함은, 식품, 식기, 취사도구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공구, 설비 또는 식품포장재료와 용기의 세척 또는 소독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을 지칭한다.  식품 유통기한이라 함은, 식품이 명시된 저장조건 하에서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지칭한다.  식품 기인성 질병이라 함은, 식품 속의 발병요인이 인체에 진입하여 초래되는 감염성, 중독성 질병을 지칭하며 식품 중독도 포함된다.  식품안전사고라 함은, 식품 기인성 질병, 식품오염 등 식품에서 기인하였고 인체건강에 해롭거나 인체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지칭한다.  **제151조** 유전자 변형 식품과 식염의 식품안전 관리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152조** 철도, 민간항공 운영 중의 식품안전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질량감독부서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국경출입국장의 식품 감독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이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군부대 전용식품과 자체공급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153조** 국무원은 실제 수요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관리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4조** 이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二十一号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于2015年4月24日修订通过，现将修订后的《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公布，自2015年10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15年4月2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证食品安全，保障公众身体健康和生命安全，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下列活动，应当遵守本法：  （一）食品生产和加工（以下称食品生产），食品销售和餐饮服务（以下称食品经营）；  （二）食品添加剂的生产经营；  （三）用于食品的包装材料、容器、洗涤剂、消毒剂和用于食品生产经营的工具、设备（以下称食品相关产品）的生产经营；  （四）食品生产经营者使用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  （五）食品的贮存和运输；  （六）对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的安全管理。  供食用的源于农业的初级产品（以下称食用农产品）的质量安全管理，遵守《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的规定。但是，食用农产品的市场销售、有关质量安全标准的制定、有关安全信息的公布和本法对农业投入品作出规定的，应当遵守本法的规定。  **第三条**　食品安全工作实行预防为主、风险管理、全程控制、社会共治，建立科学、严格的监督管理制度。  **第四条**食品生产经营者对其生产经营食品的安全负责。  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法律、法规和食品安全标准从事生产经营活动，保证食品安全，诚信自律，对社会和公众负责，接受社会监督，承担社会责任。  **第五条**国务院设立食品安全委员会，其职责由国务院规定。  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本法和国务院规定的职责，对食品生产经营活动实施监督管理。  国务院卫生行政部门依照本法和国务院规定的职责，组织开展食品安全风险监测和风险评估，会同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并公布食品安全国家标准。  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照本法和国务院规定的职责，承担有关食品安全工作。  **第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的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负责，统一领导、组织、协调本行政区域的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以及食品安全突发事件应对工作，建立健全食品安全全程监督管理工作机制和信息共享机制。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照本法和国务院的规定，确定本级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职责。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的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  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在乡镇或者特定区域设立派出机构。  **第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实行食品安全监督管理责任制。上级人民政府负责对下一级人民政府的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进行评议、考核。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对本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进行评议、考核。  **第八条**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食品安全工作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将食品安全工作经费列入本级政府财政预算，加强食品安全监督管理能力建设，为食品安全工作提供保障。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沟通、密切配合，按照各自职责分工，依法行使职权，承担责任。  **第九条**　食品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按照章程建立健全行业规范和奖惩机制，提供食品安全信息、技术等服务，引导和督促食品生产经营者依法生产经营，推动行业诚信建设，宣传、普及食品安全知识。  消费者协会和其他消费者组织对违反本法规定，损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依法进行社会监督。  **第十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食品安全的宣传教育，普及食品安全知识，鼓励社会组织、基层群众性自治组织、食品生产经营者开展食品安全法律、法规以及食品安全标准和知识的普及工作，倡导健康的饮食方式，增强消费者食品安全意识和自我保护能力。  新闻媒体应当开展食品安全法律、法规以及食品安全标准和知识的公益宣传，并对食品安全违法行为进行舆论监督。有关食品安全的宣传报道应当真实、公正。  **第十一条**　国家鼓励和支持开展与食品安全有关的基础研究、应用研究，鼓励和支持食品生产经营者为提高食品安全水平采用先进技术和先进管理规范。  国家对农药的使用实行严格的管理制度，加快淘汰剧毒、高毒、高残留农药，推动替代产品的研发和应用，鼓励使用高效低毒低残留农药。  **第十二条**　任何组织或者个人有权举报食品安全违法行为，依法向有关部门了解食品安全信息，对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提出意见和建议。  第十三条　对在食品安全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二章 食品安全风险监测和评估**  **第十四条**　国家建立食品安全风险监测制度，对食源性疾病、食品污染以及食品中的有害因素进行监测。  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制定、实施国家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  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获知有关食品安全风险信息后，应当立即核实并向国务院卫生行政部门通报。对有关部门通报的食品安全风险信息以及医疗机构报告的食源性疾病等有关疾病信息，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分析研究，认为必要的，及时调整国家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会同同级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根据国家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结合本行政区域的具体情况，制定、调整本行政区域的食品安全风险监测方案，报国务院卫生行政部门备案并实施。  **第十五条**　承担食品安全风险监测工作的技术机构应当根据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和监测方案开展监测工作，保证监测数据真实、准确，并按照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和监测方案的要求报送监测数据和分析结果。  食品安全风险监测工作人员有权进入相关食用农产品种植养殖、食品生产经营场所采集样品、收集相关数据。采集样品应当按照市场价格支付费用。  **第十六条**　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表明可能存在食品安全隐患的，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将相关信息通报同级食品药品监督管理等部门，并报告本级人民政府和上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食品药品监督管理等部门应当组织开展进一步调查。  **第十七条**　国家建立食品安全风险评估制度，运用科学方法，根据食品安全风险监测信息、科学数据以及有关信息，对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中生物性、化学性和物理性危害因素进行风险评估。  国务院卫生行政部门负责组织食品安全风险评估工作，成立由医学、农业、食品、营养、生物、环境等方面的专家组成的食品安全风险评估专家委员会进行食品安全风险评估。食品安全风险评估结果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公布。  对农药、肥料、兽药、饲料和饲料添加剂等的安全性评估，应当有食品安全风险评估专家委员会的专家参加。  食品安全风险评估不得向生产经营者收取费用，采集样品应当按照市场价格支付费用。  **第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进行食品安全风险评估：  （一）通过食品安全风险监测或者接到举报发现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可能存在安全隐患的；  （二）为制定或者修订食品安全国家标准提供科学依据需要进行风险评估的；  （三）为确定监督管理的重点领域、重点品种需要进行风险评估的；  （四）发现新的可能危害食品安全因素的；  （五）需要判断某一因素是否构成食品安全隐患的；  （六）国务院卫生行政部门认为需要进行风险评估的其他情形。  **第十九条**　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农业行政等部门在监督管理工作中发现需要进行食品安全风险评估的，应当向国务院卫生行政部门提出食品安全风险评估的建议，并提供风险来源、相关检验数据和结论等信息、资料。属于本法第十八条规定情形的，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进行食品安全风险评估，并向国务院有关部门通报评估结果。  **第二十条**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农业行政部门应当及时相互通报食品、食用农产品安全风险监测信息。  国务院卫生行政、农业行政部门应当及时相互通报食品、食用农产品安全风险评估结果等信息。  **第二十一条**食品安全风险评估结果是制定、修订食品安全标准和实施食品安全监督管理的科学依据。  经食品安全风险评估，得出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不安全结论的，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应当依据各自职责立即向社会公告，告知消费者停止食用或者使用，并采取相应措施，确保该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停止生产经营；需要制定、修订相关食品安全国家标准的，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会同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立即制定、修订。  **第二十二条**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食品安全风险评估结果、食品安全监督管理信息，对食品安全状况进行综合分析。对经综合分析表明可能具有较高程度安全风险的食品，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提出食品安全风险警示，并向社会公布。  **第二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食品安全风险评估专家委员会及其技术机构，应当按照科学、客观、及时、公开的原则，组织食品生产经营者、食品检验机构、认证机构、食品行业协会、消费者协会以及新闻媒体等，就食品安全风险评估信息和食品安全监督管理信息进行交流沟通。  **第三章　食品安全标准**  **第二十四条**　制定食品安全标准，应当以保障公众身体健康为宗旨，做到科学合理、安全可靠。  **第二十五条**　食品安全标准是强制执行的标准。除食品安全标准外，不得制定其他食品强制性标准。  **第二十六条**　食品安全标准应当包括下列内容：  （一）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中的致病性微生物，农药残留、兽药残留、生物毒素、重金属等污染物质以及其他危害人体健康物质的限量规定；  （二）食品添加剂的品种、使用范围、用量；  （三）专供婴幼儿和其他特定人群的主辅食品的营养成分要求；  （四）对与卫生、营养等食品安全要求有关的标签、标志、说明书的要求；  （五）食品生产经营过程的卫生要求；  （六）与食品安全有关的质量要求；  （七）与食品安全有关的食品检验方法与规程；  （八）其他需要制定为食品安全标准的内容。  **第二十七条**　食品安全国家标准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公布，国务院标准化行政部门提供国家标准编号。  食品中农药残留、兽药残留的限量规定及其检验方法与规程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国务院农业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  屠宰畜、禽的检验规程由国务院农业行政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  **第二十八条**　制定食品安全国家标准，应当依据食品安全风险评估结果并充分考虑食用农产品安全风险评估结果，参照相关的国际标准和国际食品安全风险评估结果，并将食品安全国家标准草案向社会公布，广泛听取食品生产经营者、消费者、有关部门等方面的意见。  食品安全国家标准应当经国务院卫生行政部门组织的食品安全国家标准审评委员会审查通过。食品安全国家标准审评委员会由医学、农业、食品、营养、生物、环境等方面的专家以及国务院有关部门、食品行业协会、消费者协会的代表组成，对食品安全国家标准草案的科学性和实用性等进行审查。  **第二十九条**　对地方特色食品，没有食品安全国家标准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可以制定并公布食品安全地方标准，报国务院卫生行政部门备案。食品安全国家标准制定后，该地方标准即行废止。  **第三十条**国家鼓励食品生产企业制定严于食品安全国家标准或者地方标准的企业标准，在本企业适用，并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备案。  **第三十一条**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制定和备案的食品安全国家标准、地方标准和企业标准，供公众免费查阅、下载。  对食品安全标准执行过程中的问题，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及时给予指导、解答。  **第三十二条**　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会同同级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农业行政等部门，分别对食品安全国家标准和地方标准的执行情况进行跟踪评价，并根据评价结果及时修订食品安全标准。  省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农业行政等部门应当对食品安全标准执行中存在的问题进行收集、汇总，并及时向同级卫生行政部门通报。  食品生产经营者、食品行业协会发现食品安全标准在执行中存在问题的，应当立即向卫生行政部门报告。  **第四章 食品生产经营**  **第一节　一般规定**  **第三十三条**食品生产经营应当符合食品安全标准，并符合下列要求：  （一）具有与生产经营的食品品种、数量相适应的食品原料处理和食品加工、包装、贮存等场所，保持该场所环境整洁，并与有毒、有害场所以及其他污染源保持规定的距离；  （二）具有与生产经营的食品品种、数量相适应的生产经营设备或者设施，有相应的消毒、更衣、盥洗、采光、照明、通风、防腐、防尘、防蝇、防鼠、防虫、洗涤以及处理废水、存放垃圾和废弃物的设备或者设施；  （三）有专职或者兼职的食品安全专业技术人员、食品安全管理人员和保证食品安全的规章制度；  （四）具有合理的设备布局和工艺流程，防止待加工食品与直接入口食品、原料与成品交叉污染，避免食品接触有毒物、不洁物；  （五）餐具、饮具和盛放直接入口食品的容器，使用前应当洗净、消毒，炊具、用具用后应当洗净，保持清洁；  （六）贮存、运输和装卸食品的容器、工具和设备应当安全、无害，保持清洁，防止食品污染，并符合保证食品安全所需的温度、湿度等特殊要求，不得将食品与有毒、有害物品一同贮存、运输；  （七）直接入口的食品应当使用无毒、清洁的包装材料、餐具、饮具和容器；  （八）食品生产经营人员应当保持个人卫生，生产经营食品时，应当将手洗净，穿戴清洁的工作衣、帽等；销售无包装的直接入口食品时，应当使用无毒、清洁的容器、售货工具和设备；  （九）用水应当符合国家规定的生活饮用水卫生标准；  （十）使用的洗涤剂、消毒剂应当对人体安全、无害；  （十一）法律、法规规定的其他要求。  非食品生产经营者从事食品贮存、运输和装卸的，应当符合前款第六项的规定。  **第三十四条** 禁止生产经营下列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  （一）用非食品原料生产的食品或者添加食品添加剂以外的化学物质和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物质的食品，或者用回收食品作为原料生产的食品；  （二）致病性微生物，农药残留、兽药残留、生物毒素、重金属等污染物质以及其他危害人体健康的物质含量超过食品安全标准限量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  （三）用超过保质期的食品原料、食品添加剂生产的食品、食品添加剂；  （四）超范围、超限量使用食品添加剂的食品；  （五）营养成分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专供婴幼儿和其他特定人群的主辅食品；  （六）腐败变质、油脂酸败、霉变生虫、污秽不洁、混有异物、掺假掺杂或者感官性状异常的食品、食品添加剂；  （七）病死、毒死或者死因不明的禽、畜、兽、水产动物肉类及其制品；  （八）未按规定进行检疫或者检疫不合格的肉类，或者未经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肉类制品；  （九）被包装材料、容器、运输工具等污染的食品、食品添加剂；  （十）标注虚假生产日期、保质期或者超过保质期的食品、食品添加剂；  （十一）无标签的预包装食品、食品添加剂；  （十二）国家为防病等特殊需要明令禁止生产经营的食品；  （十三）其他不符合法律、法规或者食品安全标准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  **第三十五条**　国家对食品生产经营实行许可制度。从事食品生产、食品销售、餐饮服务，应当依法取得许可。但是，销售食用农产品，不需要取得许可。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规定，审核申请人提交的本法第三十三条第一款第一项至第四项规定要求的相关资料，必要时对申请人的生产经营场所进行现场核查；对符合规定条件的，准予许可；对不符合规定条件的，不予许可并书面说明理由。  **第三十六条**　食品生产加工小作坊和食品摊贩等从事食品生产经营活动，应当符合本法规定的与其生产经营规模、条件相适应的食品安全要求，保证所生产经营的食品卫生、无毒、无害，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其加强监督管理。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对食品生产加工小作坊、食品摊贩等进行综合治理，加强服务和统一规划，改善其生产经营环境，鼓励和支持其改进生产经营条件，进入集中交易市场、店铺等固定场所经营，或者在指定的临时经营区域、时段经营。  食品生产加工小作坊和食品摊贩等的具体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制定。  **第三十七条**　利用新的食品原料生产食品，或者生产食品添加剂新品种、食品相关产品新品种，应当向国务院卫生行政部门提交相关产品的安全性评估材料。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六十日内组织审查；对符合食品安全要求的，准予许可并公布；对不符合食品安全要求的，不予许可并书面说明理由。  **第三十八条**　生产经营的食品中不得添加药品，但是可以添加按照传统既是食品又是中药材的物质。按照传统既是食品又是中药材的物质目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公布。  **第三十九条**　国家对食品添加剂生产实行许可制度。从事食品添加剂生产，应当具有与所生产食品添加剂品种相适应的场所、生产设备或者设施、专业技术人员和管理制度，并依照本法第三十五条第二款规定的程序，取得食品添加剂生产许可。  生产食品添加剂应当符合法律、法规和食品安全国家标准。  **第四十条**　食品添加剂应当在技术上确有必要且经过风险评估证明安全可靠，方可列入允许使用的范围；有关食品安全国家标准应当根据技术必要性和食品安全风险评估结果及时修订。  食品生产经营者应当按照食品安全国家标准使用食品添加剂。  **第四十一条**　生产食品相关产品应当符合法律、法规和食品安全国家标准。对直接接触食品的包装材料等具有较高风险的食品相关产品，按照国家有关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的规定实施生产许可。质量监督部门应当加强对食品相关产品生产活动的监督管理。  **第四十二条**　国家建立食品安全全程追溯制度。  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本法的规定，建立食品安全追溯体系，保证食品可追溯。国家鼓励食品生产经营者采用信息化手段采集、留存生产经营信息，建立食品安全追溯体系。  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等有关部门建立食品安全全程追溯协作机制。  **第四十三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鼓励食品规模化生产和连锁经营、配送。  国家鼓励食品生产经营企业参加食品安全责任保险。  **第二节　生产经营过程控制**  **第四十四条**　食品生产经营企业应当建立健全食品安全管理制度，对职工进行食品安全知识培训，加强食品检验工作，依法从事生产经营活动。  食品生产经营企业的主要负责人应当落实企业食品安全管理制度，对本企业的食品安全工作全面负责。  食品生产经营企业应当配备食品安全管理人员，加强对其培训和考核。经考核不具备食品安全管理能力的，不得上岗。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企业食品安全管理人员随机进行监督抽查考核并公布考核情况。监督抽查考核不得收取费用。  **第四十五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并执行从业人员健康管理制度。患有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的有碍食品安全疾病的人员，不得从事接触直接入口食品的工作。  从事接触直接入口食品工作的食品生产经营人员应当每年进行健康检查，取得健康证明后方可上岗工作。  **第四十六条**　食品生产企业应当就下列事项制定并实施控制要求，保证所生产的食品符合食品安全标准：  （一）原料采购、原料验收、投料等原料控制；  （二）生产工序、设备、贮存、包装等生产关键环节控制；  （三）原料检验、半成品检验、成品出厂检验等检验控制；  （四）运输和交付控制。  **第四十七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食品安全自查制度，定期对食品安全状况进行检查评价。生产经营条件发生变化，不再符合食品安全要求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采取整改措施；有发生食品安全事故潜在风险的，应当立即停止食品生产经营活动，并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第四十八条**　国家鼓励食品生产经营企业符合良好生产规范要求，实施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提高食品安全管理水平。  对通过良好生产规范、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认证的食品生产经营企业，认证机构应当依法实施跟踪调查；对不再符合认证要求的企业，应当依法撤销认证，及时向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通报，并向社会公布。认证机构实施跟踪调查不得收取费用。  **第四十九条**　食用农产品生产者应当按照食品安全标准和国家有关规定使用农药、肥料、兽药、饲料和饲料添加剂等农业投入品，严格执行农业投入品使用安全间隔期或者休药期的规定，不得使用国家明令禁止的农业投入品。禁止将剧毒、高毒农药用于蔬菜、瓜果、茶叶和中草药材等国家规定的农作物。  食用农产品的生产企业和农民专业合作经济组织应当建立农业投入品使用记录制度。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部门应当加强对农业投入品使用的监督管理和指导，建立健全农业投入品安全使用制度。  **第五十条**　食品生产者采购食品原料、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应当查验供货者的许可证和产品合格证明；对无法提供合格证明的食品原料，应当按照食品安全标准进行检验；不得采购或者使用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原料、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  食品生产企业应当建立食品原料、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进货查验记录制度，如实记录食品原料、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或者生产批号、保质期、进货日期以及供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不得少于产品保质期满后六个月；没有明确保质期的，保存期限不得少于二年。  **第五十一条**　食品生产企业应当建立食品出厂检验记录制度，查验出厂食品的检验合格证和安全状况，如实记录食品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或者生产批号、保质期、检验合格证号、销售日期以及购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应当符合本法第五十条第二款的规定。  **第五十二条**　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的生产者，应当按照食品安全标准对所生产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进行检验，检验合格后方可出厂或者销售。  **第五十三条**　食品经营者采购食品，应当查验供货者的许可证和食品出厂检验合格证或者其他合格证明（以下称合格证明文件）。  食品经营企业应当建立食品进货查验记录制度，如实记录食品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或者生产批号、保质期、进货日期以及供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应当符合本法第五十条第二款的规定。  实行统一配送经营方式的食品经营企业，可以由企业总部统一查验供货者的许可证和食品合格证明文件，进行食品进货查验记录。  从事食品批发业务的经营企业应当建立食品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批发食品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或者生产批号、保质期、销售日期以及购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应当符合本法第五十条第二款的规定。  **第五十四条**　食品经营者应当按照保证食品安全的要求贮存食品，定期检查库存食品，及时清理变质或者超过保质期的食品。  食品经营者贮存散装食品，应当在贮存位置标明食品的名称、生产日期或者生产批号、保质期、生产者名称及联系方式等内容。  **第五十五条**　餐饮服务提供者应当制定并实施原料控制要求，不得采购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原料。倡导餐饮服务提供者公开加工过程，公示食品原料及其来源等信息。  餐饮服务提供者在加工过程中应当检查待加工的食品及原料，发现有本法第三十四条第六项规定情形的，不得加工或者使用。  **第五十六条**　餐饮服务提供者应当定期维护食品加工、贮存、陈列等设施、设备；定期清洗、校验保温设施及冷藏、冷冻设施。  餐饮服务提供者应当按照要求对餐具、饮具进行清洗消毒，不得使用未经清洗消毒的餐具、饮具；餐饮服务提供者委托清洗消毒餐具、饮具的，应当委托符合本法规定条件的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  **第五十七条**　学校、托幼机构、养老机构、建筑工地等集中用餐单位的食堂应当严格遵守法律、法规和食品安全标准；从供餐单位订餐的，应当从取得食品生产经营许可的企业订购，并按照要求对订购的食品进行查验。供餐单位应当严格遵守法律、法规和食品安全标准，当餐加工，确保食品安全。  学校、托幼机构、养老机构、建筑工地等集中用餐单位的主管部门应当加强对集中用餐单位的食品安全教育和日常管理，降低食品安全风险，及时消除食品安全隐患。  **第五十八条**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应当具备相应的作业场所、清洗消毒设备或者设施，用水和使用的洗涤剂、消毒剂应当符合相关食品安全国家标准和其他国家标准、卫生规范。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应当对消毒餐具、饮具进行逐批检验，检验合格后方可出厂，并应当随附消毒合格证明。消毒后的餐具、饮具应当在独立包装上标注单位名称、地址、联系方式、消毒日期以及使用期限等内容。  **第五十九条**　食品添加剂生产者应当建立食品添加剂出厂检验记录制度，查验出厂产品的检验合格证和安全状况，如实记录食品添加剂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或者生产批号、保质期、检验合格证号、销售日期以及购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相关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应当符合本法第五十条第二款的规定。  **第六十条**　食品添加剂经营者采购食品添加剂，应当依法查验供货者的许可证和产品合格证明文件，如实记录食品添加剂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或者生产批号、保质期、进货日期以及供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应当符合本法第五十条第二款的规定。  **第六十一条**　集中交易市场的开办者、柜台出租者和展销会举办者，应当依法审查入场食品经营者的许可证，明确其食品安全管理责任，定期对其经营环境和条件进行检查，发现其有违反本法规定行为的，应当及时制止并立即报告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  **第六十二条**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对入网食品经营者进行实名登记，明确其食品安全管理责任；依法应当取得许可证的，还应当审查其许可证。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发现入网食品经营者有违反本法规定行为的，应当及时制止并立即报告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发现严重违法行为的，应当立即停止提供网络交易平台服务。  **第六十三条**　国家建立食品召回制度。食品生产者发现其生产的食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立即停止生产，召回已经上市销售的食品，通知相关生产经营者和消费者，并记录召回和通知情况。  食品经营者发现其经营的食品有前款规定情形的，应当立即停止经营，通知相关生产经营者和消费者，并记录停止经营和通知情况。食品生产者认为应当召回的，应当立即召回。由于食品经营者的原因造成其经营的食品有前款规定情形的，食品经营者应当召回。  食品生产经营者应当对召回的食品采取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防止其再次流入市场。但是，对因标签、标志或者说明书不符合食品安全标准而被召回的食品，食品生产者在采取补救措施且能保证食品安全的情况下可以继续销售；销售时应当向消费者明示补救措施。  食品生产经营者应当将食品召回和处理情况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需要对召回的食品进行无害化处理、销毁的，应当提前报告时间、地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认为必要的，可以实施现场监督。  食品生产经营者未依照本条规定召回或者停止经营的，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责令其召回或者停止经营。  **第六十四条**　食用农产品批发市场应当配备检验设备和检验人员或者委托符合本法规定的食品检验机构，对进入该批发市场销售的食用农产品进行抽样检验；发现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应当要求销售者立即停止销售，并向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第六十五条**食用农产品销售者应当建立食用农产品进货查验记录制度，如实记录食用农产品的名称、数量、进货日期以及供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不得少于六个月。  **第六十六条**　进入市场销售的食用农产品在包装、保鲜、贮存、运输中使用保鲜剂、防腐剂等食品添加剂和包装材料等食品相关产品，应当符合食品安全国家标准。  **第三节　标签、说明书和广告**  **第六十七条**　预包装食品的包装上应当有标签。标签应当标明下列事项：  （一）名称、规格、净含量、生产日期；  （二）成分或者配料表；  （三）生产者的名称、地址、联系方式；  （四）保质期；  （五）产品标准代号；  （六）贮存条件；  （七）所使用的食品添加剂在国家标准中的通用名称；  （八）生产许可证编号；  （九）法律、法规或者食品安全标准规定应当标明的其他事项。  专供婴幼儿和其他特定人群的主辅食品，其标签还应当标明主要营养成分及其含量。  食品安全国家标准对标签标注事项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六十八条**　食品经营者销售散装食品，应当在散装食品的容器、外包装上标明食品的名称、生产日期或者生产批号、保质期以及生产经营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  **第六十九条**　生产经营转基因食品应当按照规定显著标示。  **第七十条**　食品添加剂应当有标签、说明书和包装。标签、说明书应当载明本法第六十七条第一款第一项至第六项、第八项、第九项规定的事项，以及食品添加剂的使用范围、用量、使用方法，并在标签上载明“食品添加剂”字样。  **第七十一条**　食品和食品添加剂的标签、说明书，不得含有虚假内容，不得涉及疾病预防、治疗功能。生产经营者对其提供的标签、说明书的内容负责。  食品和食品添加剂的标签、说明书应当清楚、明显，生产日期、保质期等事项应当显著标注，容易辨识。  食品和食品添加剂与其标签、说明书的内容不符的，不得上市销售。  **第七十二条**　食品经营者应当按照食品标签标示的警示标志、警示说明或者注意事项的要求销售食品。  **第七十三条**　食品广告的内容应当真实合法，不得含有虚假内容，不得涉及疾病预防、治疗功能。食品生产经营者对食品广告内容的真实性、合法性负责。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以及食品检验机构、食品行业协会不得以广告或者其他形式向消费者推荐食品。消费者组织不得以收取费用或者其他牟取利益的方式向消费者推荐食品。  **第四节　特殊食品**  **第七十四条**　国家对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和婴幼儿配方食品等特殊食品实行严格监督管理。  **第七十五条**　保健食品声称保健功能，应当具有科学依据，不得对人体产生急性、亚急性或者慢性危害。  保健食品原料目录和允许保健食品声称的保健功能目录，由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国家中医药管理部门制定、调整并公布。  保健食品原料目录应当包括原料名称、用量及其对应的功效；列入保健食品原料目录的原料只能用于保健食品生产，不得用于其他食品生产。  **第七十六条**　使用保健食品原料目录以外原料的保健食品和首次进口的保健食品应当经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注册。但是，首次进口的保健食品中属于补充维生素、矿物质等营养物质的，应当报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其他保健食品应当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  进口的保健食品应当是出口国（地区）主管部门准许上市销售的产品。  **第七十七条**　依法应当注册的保健食品，注册时应当提交保健食品的研发报告、产品配方、生产工艺、安全性和保健功能评价、标签、说明书等材料及样品，并提供相关证明文件。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经组织技术审评，对符合安全和功能声称要求的，准予注册；对不符合要求的，不予注册并书面说明理由。对使用保健食品原料目录以外原料的保健食品作出准予注册决定的，应当及时将该原料纳入保健食品原料目录。  依法应当备案的保健食品，备案时应当提交产品配方、生产工艺、标签、说明书以及表明产品安全性和保健功能的材料。  **第七十八条**　保健食品的标签、说明书不得涉及疾病预防、治疗功能，内容应当真实，与注册或者备案的内容相一致，载明适宜人群、不适宜人群、功效成分或者标志性成分及其含量等，并声明“本品不能代替药物”。保健食品的功能和成分应当与标签、说明书相一致。  **第七十九条**  保健食品广告除应当符合本法第七十三条第一款的规定外，还应当声明“本品不能代替药物”；其内容应当经生产企业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审查批准，取得保健食品广告批准文件。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公布并及时更新已经批准的保健食品广告目录以及批准的广告内容。  **第八十条**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应当经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注册。注册时，应当提交产品配方、生产工艺、标签、说明书以及表明产品安全性、营养充足性和特殊医学用途临床效果的材料。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广告适用《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和其他法律、行政法规关于药品广告管理的规定。  **第八十一条**　婴幼儿配方食品生产企业应当实施从原料进厂到成品出厂的全过程质量控制，对出厂的婴幼儿配方食品实施逐批检验，保证食品安全。  生产婴幼儿配方食品使用的生鲜乳、辅料等食品原料、食品添加剂等，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食品安全国家标准，保证婴幼儿生长发育所需的营养成分。  婴幼儿配方食品生产企业应当将食品原料、食品添加剂、产品配方及标签等事项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  婴幼儿配方乳粉的产品配方应当经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注册。注册时，应当提交配方研发报告和其他表明配方科学性、安全性的材料。  不得以分装方式生产婴幼儿配方乳粉，同一企业不得用同一配方生产不同品牌的婴幼儿配方乳粉。  **第八十二条** 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乳粉的注册人或者备案人应当对其提交材料的真实性负责。  省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公布注册或者备案的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乳粉目录，并对注册或者备案中获知的企业商业秘密予以保密。  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乳粉生产企业应当按照注册或者备案的产品配方、生产工艺等技术要求组织生产。  **第八十三条**　生产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和其他专供特定人群的主辅食品的企业，应当按照良好生产规范的要求建立与所生产食品相适应的生产质量管理体系，定期对该体系的运行情况进行自查，保证其有效运行，并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提交自查报告。  **第五章　食品检验**  **第八十四条**　食品检验机构按照国家有关认证认可的规定取得资质认定后，方可从事食品检验活动。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食品检验机构的资质认定条件和检验规范，由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规定。  符合本法规定的食品检验机构出具的检验报告具有同等效力。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整合食品检验资源，实现资源共享。  **第八十五条** 食品检验由食品检验机构指定的检验人独立进行。  检验人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并按照食品安全标准和检验规范对食品进行检验，尊重科学，恪守职业道德，保证出具的检验数据和结论客观、公正，不得出具虚假检验报告。  **第八十六条** 食品检验实行食品检验机构与检验人负责制。食品检验报告应当加盖食品检验机构公章，并有检验人的签名或者盖章。食品检验机构和检验人对出具的食品检验报告负责。  **第八十七条**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食品进行定期或者不定期的抽样检验，并依据有关规定公布检验结果，不得免检。进行抽样检验，应当购买抽取的样品，委托符合本法规定的食品检验机构进行检验，并支付相关费用；不得向食品生产经营者收取检验费和其他费用。  **第八十八条**　对依照本法规定实施的检验结论有异议的，食品生产经营者可以自收到检验结论之日起七个工作日内向实施抽样检验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或者其上一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提出复检申请，由受理复检申请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公布的复检机构名录中随机确定复检机构进行复检。复检机构出具的复检结论为最终检验结论。复检机构与初检机构不得为同一机构。复检机构名录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农业行政等部门共同公布。  采用国家规定的快速检测方法对食用农产品进行抽查检测，被抽查人对检测结果有异议的，可以自收到检测结果时起四小时内申请复检。复检不得采用快速检测方法。  **第八十九条**　食品生产企业可以自行对所生产的食品进行检验，也可以委托符合本法规定的食品检验机构进行检验。  食品行业协会和消费者协会等组织、消费者需要委托食品检验机构对食品进行检验的，应当委托符合本法规定的食品检验机构进行。  **第九十条**　食品添加剂的检验，适用本法有关食品检验的规定。  **第六章 食品进出口**  **第九十一条**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对进出口食品安全实施监督管理。  **第九十二条**　进口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应当符合我国食品安全国家标准。  进口的食品、食品添加剂应当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进出口商品检验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检验合格。  进口的食品、食品添加剂应当按照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的要求随附合格证明材料。  **第九十三条**　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由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或者其委托的进口商向国务院卫生行政部门提交所执行的相关国家（地区）标准或者国际标准。国务院卫生行政部门对相关标准进行审查，认为符合食品安全要求的，决定暂予适用，并及时制定相应的食品安全国家标准。进口利用新的食品原料生产的食品或者进口食品添加剂新品种、食品相关产品新品种，依照本法第三十七条的规定办理。  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要求，对前款规定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进行检验。检验结果应当公开。  **第九十四条**　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应当保证向我国出口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符合本法以及我国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并对标签、说明书的内容负责。  进口商应当建立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审核制度，重点审核前款规定的内容；审核不合格的，不得进口。  发现进口食品不符合我国食品安全国家标准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进口商应当立即停止进口，并依照本法第六十三条的规定召回。  **第九十五条**　境外发生的食品安全事件可能对我国境内造成影响，或者在进口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中发现严重食品安全问题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及时采取风险预警或者控制措施，并向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农业行政部门通报。接到通报的部门应当及时采取相应措施。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国内市场上销售的进口食品、食品添加剂实施监督管理。发现存在严重食品安全问题的，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向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通报。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及时采取相应措施。  **第九十六条**　向我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出口商或者代理商、进口食品的进口商应当向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备案。向我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食品生产企业应当经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注册。已经注册的境外食品生产企业提供虚假材料，或者因其自身的原因致使进口食品发生重大食品安全事故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撤销注册并公告。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定期公布已经备案的境外出口商、代理商、进口商和已经注册的境外食品生产企业名单。  **第九十七条**　进口的预包装食品、食品添加剂应当有中文标签；依法应当有说明书的，还应当有中文说明书。标签、说明书应当符合本法以及我国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并载明食品的原产地以及境内代理商的名称、地址、联系方式。预包装食品没有中文标签、中文说明书或者标签、说明书不符合本条规定的，不得进口。  **第九十八条**　进口商应当建立食品、食品添加剂进口和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食品、食品添加剂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生产或者进口批号、保质期、境外出口商和购货者名称、地址及联系方式、交货日期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应当符合本法第五十条第二款的规定。  **第九十九条**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保证其出口食品符合进口国（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  出口食品生产企业和出口食品原料种植、养殖场应当向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备案。  **第一百条**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收集、汇总下列进出口食品安全信息，并及时通报相关部门、机构和企业：  （一）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进出口食品实施检验检疫发现的食品安全信息；  （二）食品行业协会和消费者协会等组织、消费者反映的进口食品安全信息；  （三）国际组织、境外政府机构发布的风险预警信息及其他食品安全信息，以及境外食品行业协会等组织、消费者反映的食品安全信息；  （四）其他食品安全信息。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对进出口食品的进口商、出口商和出口食品生产企业实施信用管理，建立信用记录，并依法向社会公布。对有不良记录的进口商、出口商和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加强对其进出口食品的检验检疫。  **第一百零一条**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可以对向我国境内出口食品的国家（地区）的食品安全管理体系和食品安全状况进行评估和审查，并根据评估和审查结果，确定相应检验检疫要求。  **第七章　食品安全事故处置**  **第一百零二条**　国务院组织制定国家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有关法律、法规的规定和上级人民政府的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以及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制定本行政区域的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并报上一级人民政府备案。  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应当对食品安全事故分级、事故处置组织指挥体系与职责、预防预警机制、处置程序、应急保障措施等作出规定。  食品生产经营企业应当制定食品安全事故处置方案，定期检查本企业各项食品安全防范措施的落实情况，及时消除事故隐患。  **第一百零三条**发生食品安全事故的单位应当立即采取措施，防止事故扩大。事故单位和接收病人进行治疗的单位应当及时向事故发生地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部门报告。  县级以上人民政府质量监督、农业行政等部门在日常监督管理中发现食品安全事故或者接到事故举报，应当立即向同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通报。  发生食品安全事故，接到报告的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应急预案的规定向本级人民政府和上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县级人民政府和上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应急预案的规定上报。  任何单位和个人不得对食品安全事故隐瞒、谎报、缓报，不得隐匿、伪造、毁灭有关证据。  **第一百零四条**　医疗机构发现其接收的病人属于食源性疾病病人或者疑似病人的，应当按照规定及时将相关信息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报告。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认为与食品安全有关的，应当及时通报同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在调查处理传染病或者其他突发公共卫生事件中发现与食品安全相关的信息，应当及时通报同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  **第一百零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接到食品安全事故的报告后，应当立即会同同级卫生行政、质量监督、农业行政等部门进行调查处理，并采取下列措施，防止或者减轻社会危害：  （一）开展应急救援工作，组织救治因食品安全事故导致人身伤害的人员；  （二）封存可能导致食品安全事故的食品及其原料，并立即进行检验；对确认属于被污染的食品及其原料，责令食品生产经营者依照本法第六十三条的规定召回或者停止经营；  （三）封存被污染的食品相关产品，并责令进行清洗消毒；  （四）做好信息发布工作，依法对食品安全事故及其处理情况进行发布，并对可能产生的危害加以解释、说明。  发生食品安全事故需要启动应急预案的，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立即成立事故处置指挥机构，启动应急预案，依照前款和应急预案的规定进行处置。  发生食品安全事故，县级以上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对事故现场进行卫生处理，并对与事故有关的因素开展流行病学调查，有关部门应当予以协助。县级以上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向同级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部门提交流行病学调查报告。  **第一百零六条**　发生食品安全事故，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立即会同有关部门进行事故责任调查，督促有关部门履行职责，向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提出事故责任调查处理报告。  涉及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的重大食品安全事故由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组织事故责任调查。  **第一百零七条**　调查食品安全事故，应当坚持实事求是、尊重科学的原则，及时、准确查清事故性质和原因，认定事故责任，提出整改措施。  调查食品安全事故，除了查明事故单位的责任，还应当查明有关监督管理部门、食品检验机构、认证机构及其工作人员的责任。  **第一百零八条**　食品安全事故调查部门有权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与事故有关的情况，并要求提供相关资料和样品。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按照要求提供相关资料和样品，不得拒绝。  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挠、干涉食品安全事故的调查处理。  **第八章 监督管理**  **第一百零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部门根据食品安全风险监测、风险评估结果和食品安全状况等，确定监督管理的重点、方式和频次，实施风险分级管理。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本级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农业行政等部门制定本行政区域的食品安全年度监督管理计划，向社会公布并组织实施。  食品安全年度监督管理计划应当将下列事项作为监督管理的重点：  （一）专供婴幼儿和其他特定人群的主辅食品；  （二） 保健食品生产过程中的添加行为和按照注册或者备案的技术要求组织生产的情况，保健食品标签、说明书以及宣传材料中有关功能宣传的情况；  （三）发生食品安全事故风险较高的食品生产经营者；  （四）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表明可能存在食品安全隐患的事项。  **第一百一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部门履行各自食品安全监督管理职责，有权采取下列措施，对生产经营者遵守本法的情况进行监督检查：  （一）进入生产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二）对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进行抽样检验；  （三）查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查封、扣押有证据证明不符合食品安全标准或者有证据证明存在安全隐患以及用于违法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  （五）查封违法从事生产经营活动的场所。  **第一百一十一条** 对食品安全风险评估结果证明食品存在安全隐患，需要制定、修订食品安全标准的，在制定、修订食品安全标准前，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食品中有害物质的临时限量值和临时检验方法，作为生产经营和监督管理的依据。  **第一百一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中可以采用国家规定的快速检测方法对食品进行抽查检测。  对抽查检测结果表明可能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应当依照本法第八十七条的规定进行检验。抽查检测结果确定有关食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可以作为行政处罚的依据。  **第一百一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食品生产经营者食品安全信用档案，记录许可颁发、日常监督检查结果、违法行为查处等情况，依法向社会公布并实时更新；对有不良信用记录的食品生产经营者增加监督检查频次，对违法行为情节严重的食品生产经营者，可以通报投资主管部门、证券监督管理机构和有关的金融机构。  **第一百一十四条**　食品生产经营过程中存在食品安全隐患，未及时采取措施消除的，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对食品生产经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采取措施，进行整改，消除隐患。责任约谈情况和整改情况应当纳入食品生产经营者食品安全信用档案。  **第一百一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应当公布本部门的电子邮件地址或者电话，接受咨询、投诉、举报。接到咨询、投诉、举报，对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受理并在法定期限内及时答复、核实、处理；对不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移交有权处理的部门并书面通知咨询、投诉、举报人。有权处理的部门应当在法定期限内及时处理，不得推诿。对查证属实的举报，给予举报人奖励。  有关部门应当对举报人的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举报人举报所在企业的，该企业不得以解除、变更劳动合同或者其他方式对举报人进行打击报复。  **第一百一十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应当加强对执法人员食品安全法律、法规、标准和专业知识与执法能力等的培训，并组织考核。不具备相应知识和能力的，不得从事食品安全执法工作。  食品生产经营者、食品行业协会、消费者协会等发现食品安全执法人员在执法过程中有违反法律、法规规定的行为以及不规范执法行为的，可以向本级或者上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或者监察机关投诉、举报。接到投诉、举报的部门或者机关应当进行核实，并将经核实的情况向食品安全执法人员所在部门通报；涉嫌违法违纪的，按照本法和有关规定处理。  **第一百一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等部门未及时发现食品安全系统性风险，未及时消除监督管理区域内的食品安全隐患的，本级人民政府可以对其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  地方人民政府未履行食品安全职责，未及时消除区域性重大食品安全隐患的，上级人民政府可以对其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  被约谈的食品药品监督管理等部门、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采取措施，对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进行整改。  责任约谈情况和整改情况应当纳入地方人民政府和有关部门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评议、考核记录。  **第一百一十八条**　国家建立统一的食品安全信息平台，实行食品安全信息统一公布制度。国家食品安全总体情况、食品安全风险警示信息、重大食品安全事故及其调查处理信息和国务院确定需要统一公布的其他信息由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统一公布。食品安全风险警示信息和重大食品安全事故及其调查处理信息的影响限于特定区域的，也可以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公布。未经授权不得发布上述信息。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农业行政部门依据各自职责公布食品安全日常监督管理信息。  公布食品安全信息，应当做到准确、及时，并进行必要的解释说明，避免误导消费者和社会舆论。  **第一百一十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质量监督、农业行政部门获知本法规定需要统一公布的信息，应当向上级主管部门报告，由上级主管部门立即报告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必要时，可以直接向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质量监督、农业行政部门应当相互通报获知的食品安全信息。  **第一百二十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编造、散布虚假食品安全信息。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发现可能误导消费者和社会舆论的食品安全信息，应当立即组织有关部门、专业机构、相关食品生产经营者等进行核实、分析，并及时公布结果。  **第一百二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发现涉嫌食品安全犯罪的，应当按照有关规定及时将案件移送公安机关。对移送的案件，公安机关应当及时审查；认为有犯罪事实需要追究刑事责任的，应当立案侦查。  公安机关在食品安全犯罪案件侦查过程中认为没有犯罪事实，或者犯罪事实显著轻微，不需要追究刑事责任，但依法应当追究行政责任的，应当及时将案件移送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和监察机关，有关部门应当依法处理。  公安机关商请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环境保护等部门提供检验结论、认定意见以及对涉案物品进行无害化处理等协助的，有关部门应当及时提供，予以协助。  **第九章 法律责任**  **第一百二十二条**　违反本法规定，未取得食品生产经营许可从事食品生产经营活动，或者未取得食品添加剂生产许可从事食品添加剂生产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以及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原料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货值金额不足一万元的，并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一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十倍以上二十倍以下罚款。  明知从事前款规定的违法行为，仍为其提供生产经营场所或者其他条件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使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与食品、食品添加剂生产经营者承担连带责任。  **第一百二十三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尚不构成犯罪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经营的食品，并可以没收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原料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食品货值金额不足一万元的，并处十万元以上十五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一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十五倍以上三十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许可证，并可以由公安机关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一）用非食品原料生产食品、在食品中添加食品添加剂以外的化学物质和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或者用回收食品作为原料生产食品，或者经营上述食品；  （二） 生产经营营养成分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专供婴幼儿和其他特定人群的主辅食品；  （三）经营病死、毒死或者死因不明的禽、畜、兽、水产动物肉类，或者生产经营其制品；  （四）经营未按规定进行检疫或者检疫不合格的肉类，或者生产经营未经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肉类制品；  （五）生产经营国家为防病等特殊需要明令禁止生产经营的食品；  （六）生产经营添加药品的食品。  明知从事前款规定的违法行为，仍为其提供生产经营场所或者其他条件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使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与食品生产经营者承担连带责任。  违法使用剧毒、高毒农药的，除依照有关法律、法规规定给予处罚外，可以由公安机关依照第一款规定给予拘留。  **第一百二十四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尚不构成犯罪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并可以没收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原料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货值金额不足一万元的，并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一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十倍以上二十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许可证：  （一）生产经营致病性微生物，农药残留、兽药残留、生物毒素、重金属等污染物质以及其他危害人体健康的物质含量超过食品安全标准限量的食品、食品添加剂；  （二）用超过保质期的食品原料、食品添加剂生产食品、食品添加剂，或者经营上述食品、食品添加剂；  （三）生产经营超范围、超限量使用食品添加剂的食品；  （四）生产经营腐败变质、油脂酸败、霉变生虫、污秽不洁、混有异物、掺假掺杂或者感官性状异常的食品、食品添加剂；  （五）生产经营标注虚假生产日期、保质期或者超过保质期的食品、食品添加剂；  （六）生产经营未按规定注册的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乳粉，或者未按注册的产品配方、生产工艺等技术要求组织生产；  （七）以分装方式生产婴幼儿配方乳粉，或者同一企业以同一配方生产不同品牌的婴幼儿配方乳粉；  （八）利用新的食品原料生产食品，或者生产食品添加剂新品种，未通过安全性评估；  （九）食品生产经营者在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其召回或者停止经营后，仍拒不召回或者停止经营。  除前款和本法第一百二十三条、第一百二十五条规定的情形外，生产经营不符合法律、法规或者食品安全标准的食品、食品添加剂的，依照前款规定给予处罚。  生产食品相关产品新品种，未通过安全性评估，或者生产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相关产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质量监督部门依照第一款规定给予处罚。  **第一百二十五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并可以没收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原料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货值金额不足一万元的，并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一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直至吊销许可证：  （一）生产经营被包装材料、容器、运输工具等污染的食品、食品添加剂；  （二）生产经营无标签的预包装食品、食品添加剂或者标签、说明书不符合本法规定的食品、食品添加剂；  （三）生产经营转基因食品未按规定进行标示；  （四）食品生产经营者采购或者使用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原料、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  生产经营的食品、食品添加剂的标签、说明书存在瑕疵但不影响食品安全且不会对消费者造成误导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二千元以下罚款。  **第一百二十六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直至吊销许可证：  （一）食品、食品添加剂生产者未按规定对采购的食品原料和生产的食品、食品添加剂进行检验；  （二） 食品生产经营企业未按规定建立食品安全管理制度，或者未按规定配备或者培训、考核食品安全管理人员；  （三）食品、食品添加剂生产经营者进货时未查验许可证和相关证明文件，或者未按规定建立并遵守进货查验记录、出厂检验记录和销售记录制度；  （四）食品生产经营企业未制定食品安全事故处置方案；  （五）餐具、饮具和盛放直接入口食品的容器，使用前未经洗净、消毒或者清洗消毒不合格，或者餐饮服务设施、设备未按规定定期维护、清洗、校验；  （六） 食品生产经营者安排未取得健康证明或者患有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的有碍食品安全疾病的人员从事接触直接入口食品的工作；  （七）食品经营者未按规定要求销售食品；  （八）保健食品生产企业未按规定向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或者未按备案的产品配方、生产工艺等技术要求组织生产；  （九）婴幼儿配方食品生产企业未将食品原料、食品添加剂、产品配方、标签等向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  （十）特殊食品生产企业未按规定建立生产质量管理体系并有效运行，或者未定期提交自查报告；  （十一）食品生产经营者未定期对食品安全状况进行检查评价，或者生产经营条件发生变化，未按规定处理；  （十二）学校、托幼机构、养老机构、建筑工地等集中用餐单位未按规定履行食品安全管理责任；  （十三）食品生产企业、餐饮服务提供者未按规定制定、实施生产经营过程控制要求。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违反本法规定用水，使用洗涤剂、消毒剂，或者出厂的餐具、饮具未按规定检验合格并随附消毒合格证明，或者未按规定在独立包装上标注相关内容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照前款规定给予处罚。  食品相关产品生产者未按规定对生产的食品相关产品进行检验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质量监督部门依照第一款规定给予处罚。  食用农产品销售者违反本法第六十五条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第一款规定给予处罚。  **第一百二十七条**对食品生产加工小作坊、食品摊贩等的违法行为的处罚，依照省、自治区、直辖市制定的具体管理办法执行。  **第一百二十八条**违反本法规定，事故单位在发生食品安全事故后未进行处置、报告的，由有关主管部门按照各自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隐匿、伪造、毁灭有关证据的，责令停产停业，没收违法所得，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吊销许可证。  **第一百二十九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本法第一百二十四条的规定给予处罚：  （一）提供虚假材料，进口不符合我国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  （二）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未提交所执行的标准并经国务院卫生行政部门审查，或者进口利用新的食品原料生产的食品或者进口食品添加剂新品种、食品相关产品新品种，未通过安全性评估；  （三）未遵守本法的规定出口食品；  （四）进口商在有关主管部门责令其依照本法规定召回进口的食品后，仍拒不召回。  违反本法规定，进口商未建立并遵守食品、食品添加剂进口和销售记录制度、境外出口商或者生产企业审核制度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本法第一百二十六条的规定给予处罚。  **第一百三十条**　违反本法规定，集中交易市场的开办者、柜台出租者、展销会的举办者允许未依法取得许可的食品经营者进入市场销售食品，或者未履行检查、报告等义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责令停业，直至由原发证部门吊销许可证；使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与食品经营者承担连带责任。  食用农产品批发市场违反本法第六十四条规定的，依照前款规定承担责任。  **第一百三十一条**违反本法规定，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未对入网食品经营者进行实名登记、审查许可证，或者未履行报告、停止提供网络交易平台服务等义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责令停业，直至由原发证部门吊销许可证；使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与食品经营者承担连带责任。  消费者通过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购买食品，其合法权益受到损害的，可以向入网食品经营者或者食品生产者要求赔偿。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不能提供入网食品经营者的真实名称、地址和有效联系方式的，由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赔偿。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赔偿后，有权向入网食品经营者或者食品生产者追偿。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作出更有利于消费者承诺的，应当履行其承诺。  **第一百三十二条**　违反本法规定，未按要求进行食品贮存、运输和装卸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等部门按照各自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并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许可证。  **第一百三十三条**　违反本法规定，拒绝、阻挠、干涉有关部门、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开展食品安全监督检查、事故调查处理、风险监测和风险评估的，由有关主管部门按照各自职责分工责令停产停业，并处二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许可证；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违反本法规定，对举报人以解除、变更劳动合同或者其他方式打击报复的，应当依照有关法律的规定承担责任。  **第一百三十四条**　食品生产经营者在一年内累计三次因违反本法规定受到责令停产停业、吊销许可证以外处罚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停产停业，直至吊销许可证。  **第一百三十五条**　被吊销许可证的食品生产经营者及其法定代表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自处罚决定作出之日起五年内不得申请食品生产经营许可，或者从事食品生产经营管理工作、担任食品生产经营企业食品安全管理人员。  因食品安全犯罪被判处有期徒刑以上刑罚的，终身不得从事食品生产经营管理工作，也不得担任食品生产经营企业食品安全管理人员。  食品生产经营者聘用人员违反前两款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吊销许可证。  **第一百三十六条**　食品经营者履行了本法规定的进货查验等义务，有充分证据证明其不知道所采购的食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并能如实说明其进货来源的，可以免予处罚，但应当依法没收其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造成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一百三十七条**　违反本法规定，承担食品安全风险监测、风险评估工作的技术机构、技术人员提供虚假监测、评估信息的，依法对技术机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技术人员给予撤职、开除处分；有执业资格的，由授予其资格的主管部门吊销执业证书。  **第一百三十八条**　违反本法规定，食品检验机构、食品检验人员出具虚假检验报告的，由授予其资质的主管部门或者机构撤销该食品检验机构的检验资质，没收所收取的检验费用，并处检验费用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检验费用不足一万元的，并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依法对食品检验机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食品检验人员给予撤职或者开除处分；导致发生重大食品安全事故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食品检验人员给予开除处分。  违反本法规定，受到开除处分的食品检验机构人员，自处分决定作出之日起十年内不得从事食品检验工作；因食品安全违法行为受到刑事处罚或者因出具虚假检验报告导致发生重大食品安全事故受到开除处分的食品检验机构人员，终身不得从事食品检验工作。食品检验机构聘用不得从事食品检验工作的人员的，由授予其资质的主管部门或者机构撤销该食品检验机构的检验资质。  食品检验机构出具虚假检验报告，使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与食品生产经营者承担连带责任。  **第一百三十九条**　违反本法规定，认证机构出具虚假认证结论，由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没收所收取的认证费用，并处认证费用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认证费用不足一万元的，并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直至撤销认证机构批准文件，并向社会公布；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负有直接责任的认证人员，撤销其执业资格。  认证机构出具虚假认证结论，使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与食品生产经营者承担连带责任。  **第一百四十条**　违反本法规定，在广告中对食品作虚假宣传，欺骗消费者，或者发布未取得批准文件、广告内容与批准文件不一致的保健食品广告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给予处罚。  广告经营者、发布者设计、制作、发布虚假食品广告，使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与食品生产经营者承担连带责任。  社会团体或者其他组织、个人在虚假广告或者其他虚假宣传中向消费者推荐食品，使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与食品生产经营者承担连带责任。  违反本法规定，食品药品监督管理等部门、食品检验机构、食品行业协会以广告或者其他形式向消费者推荐食品，消费者组织以收取费用或者其他牟取利益的方式向消费者推荐食品的，由有关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对食品作虚假宣传且情节严重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决定暂停销售该食品，并向社会公布；仍然销售该食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和违法销售的食品，并处二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第一百四十一条**　违反本法规定，编造、散布虚假食品安全信息，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媒体编造、散布虚假食品安全信息的，由有关主管部门依法给予处罚，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使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依法承担消除影响、恢复名誉、赔偿损失、赔礼道歉等民事责任。  **第一百四十二条**　违反本法规定，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造成严重后果的，其主要负责人还应当引咎辞职：  （一）对发生在本行政区域内的食品安全事故，未及时组织协调有关部门开展有效处置，造成不良影响或者损失；  （二）对本行政区域内涉及多环节的区域性食品安全问题，未及时组织整治，造成不良影响或者损失；  （三）隐瞒、谎报、缓报食品安全事故；  （四）本行政区域内发生特别重大食品安全事故，或者连续发生重大食品安全事故。  **第一百四十三条**　违反本法规定，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造成严重后果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一）未确定有关部门的食品安全监督管理职责，未建立健全食品安全全程监督管理工作机制和信息共享机制，未落实食品安全监督管理责任制；  （二）未制定本行政区域的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或者发生食品安全事故后未按规定立即成立事故处置指挥机构、启动应急预案。  **第一百四十四条**　违反本法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质量监督、农业行政等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造成严重后果的，其主要负责人还应当引咎辞职：  （一）隐瞒、谎报、缓报食品安全事故；  （二）未按规定查处食品安全事故，或者接到食品安全事故报告未及时处理，造成事故扩大或者蔓延；  （三）经食品安全风险评估得出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不安全结论后，未及时采取相应措施，造成食品安全事故或者不良社会影响；  （四）对不符合条件的申请人准予许可，或者超越法定职权准予许可；  （五）不履行食品安全监督管理职责，导致发生食品安全事故。  **第一百四十五条**　违反本法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卫生行政、质量监督、农业行政等部门有下列行为之一，造成不良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一）在获知有关食品安全信息后，未按规定向上级主管部门和本级人民政府报告，或者未按规定相互通报；  （二）未按规定公布食品安全信息；  （三）不履行法定职责，对查处食品安全违法行为不配合，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  **第一百四十六条**　食品药品监督管理、质量监督等部门在履行食品安全监督管理职责过程中，违法实施检查、强制等执法措施，给生产经营者造成损失的，应当依法予以赔偿，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一百四十七条**　违反本法规定，造成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生产经营者财产不足以同时承担民事赔偿责任和缴纳罚款、罚金时，先承担民事赔偿责任。  **第一百四十八条**　消费者因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受到损害的，可以向经营者要求赔偿损失，也可以向生产者要求赔偿损失。接到消费者赔偿要求的生产经营者，应当实行首负责任制，先行赔付，不得推诿；属于生产者责任的，经营者赔偿后有权向生产者追偿；属于经营者责任的，生产者赔偿后有权向经营者追偿。  生产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或者经营明知是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消费者除要求赔偿损失外，还可以向生产者或者经营者要求支付价款十倍或者损失三倍的赔偿金；增加赔偿的金额不足一千元的，为一千元。但是，食品的标签、说明书存在不影响食品安全且不会对消费者造成误导的瑕疵的除外。  **第一百四十九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章　附 则**  **第一百五十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食品，指各种供人食用或者饮用的成品和原料以及按照传统既是食品又是中药材的物品，但是不包括以治疗为目的的物品。  食品安全，指食品无毒、无害，符合应当有的营养要求，对人体健康不造成任何急性、亚急性或者慢性危害。  预包装食品，指预先定量包装或者制作在包装材料、容器中的食品。  食品添加剂，指为改善食品品质和色、香、味以及为防腐、保鲜和加工工艺的需要而加入食品中的人工合成或者天然物质，包括营养强化剂。  用于食品的包装材料和容器，指包装、盛放食品或者食品添加剂用的纸、竹、木、金属、搪瓷、陶瓷、塑料、橡胶、天然纤维、化学纤维、玻璃等制品和直接接触食品或者食品添加剂的涂料。  用于食品生产经营的工具、设备，指在食品或者食品添加剂生产、销售、使用过程中直接接触食品或者食品添加剂的机械、管道、传送带、容器、用具、餐具等。  用于食品的洗涤剂、消毒剂，指直接用于洗涤或者消毒食品、餐具、饮具以及直接接触食品的工具、设备或者食品包装材料和容器的物质。  食品保质期，指食品在标明的贮存条件下保持品质的期限。  食源性疾病，指食品中致病因素进入人体引起的感染性、中毒性等疾病，包括食物中毒。  食品安全事故，指食源性疾病、食品污染等源于食品，对人体健康有危害或者可能有危害的事故。  **第一百五十一条**　转基因食品和食盐的食品安全管理，本法未作规定的，适用其他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一百五十二条**　铁路、民航运营中食品安全的管理办法由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依照本法制定。  保健食品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本法制定。  食品相关产品生产活动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质量监督部门依照本法制定。  国境口岸食品的监督管理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本法以及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施。  军队专用食品和自供食品的食品安全管理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依照本法制定。  **第一百五十三条**　国务院根据实际需要，可以对食品安全监督管理体制作出调整。  **第一百五十四条**　本法自2015年10月1日起施行。 |